



한국 정부, 3,250억원 쉐들러 ISDS 전부 승소

- 론스타·엘리엇 승소에 이은 승리 -

- 대한민국 정부는 어제(3. 14.) 새벽 02:03경(한국시간), 스위스 국적 글로벌 엘리베이터 회사 쉐들러(Schindler Holding AG)가 2018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韓-EFTA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로부터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전부 승소’ 및 ‘쉐들러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96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중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간 체결된 투자협정

- 이 사건은 쉐들러가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불충분한 조사·심사를 문제삼으며 최초 약 4,900억 원, 최종적으로 약 3,250억 원(2억 1,690만 달러)을 배상하라고 중재를 제기한 사건으로,

- 중재판정부는 위 기관들의 조치가 자의적·차별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으며, 권한 남용이 없는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판단하여 쉐들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정부 규제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는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 이 사건은 최근 론스타 취소절차 승소·엘리엇 취소소송 승소에 이은 대한민국 정부의 쾌거로,

- 정부는 ▲금융, 공정거래 당국의 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관련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습니다.

1. 개요

- 한국 정부는 스위스 국적의 글로벌 엘리베이터 회사 쉐들러 (Schindler Holding AG)가 한-EFTA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18. 10.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 (이하 ‘쉐들러 사건’) 에서, 2026. 3. 14. 02:03(한국시간) 대한민국의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받았습니다.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중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간 체결된 투자협정

- 본 사건은 쉐들러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하 각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투자한 국내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이하 HE)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입니다.
- 쉐들러 측은 최초 청구액으로 약 4,900억 원(2억 5,900만 스위스프랑), 최종 심리 단계에서는 약 3,250억 원(2억 1,69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대한민국에 청구하였습니다.

* 2024. 7. 5. 쉐들러의 심리후속서면 제출 당시 배상 청구액 기준

※ 판정선고일(3.14) 기준 환율: 스위스 프랑 1,893원, 美 달러 1,500원

※ 정부 측 대리로펌: (국내) 태평양 (국외) Debevoise & Plimpton

쉐들러 측 대리로펌: (국내) 김앤장 (국외)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 어제(3. 14.)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용하여, ‘쉐들러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선고하여, 정부는 본안에서 전부 승소를 통해 막대한 배상금 지급을 방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또한, 중재판정부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쉐들러 측이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 원(선고일 환율 기준)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함으로써, 정부는 이 사건 중재절차에 지출한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요 경과

※ 이하 한국시간 기준

- 2018. 7. / 10. 원들러, 중재의향서 / 중재신청통지 각 접수
- 2020. 1.~2024. 4. 양측, 서면 공방
- 2024. 4. 22.~26. 구술심리(Hearing) (헤이그)
- 2024. 7. 5. 심리 후속서면(Post-Hearing Brief; “PHB”) 공방
- 2026. 3. 14. 중재판정 선고 (정부 전부 승소)

3. 판정 요지

양측 주장 요지

□ 원들러 측 주장 : 한국 정부의 현대그룹 경영권 비호

-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위법행위 주장] 원들러는 HE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유지를 위해 2013~2015년에 걸쳐 불필요한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2016년에는 HE 경영진에 콜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헐값에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규제당국의 의무 해태 주장] 원들러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에 제기한 수 차례의 민원·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적절한 조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원들러는 금감원이 HE의 유상증자 신고서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채, 허위기재를 묵인하고 그대로 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치적 동기 및 차별 대우 주장] 원들러는 한국 정부가 현대그룹 회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하고, 외국 투자자인 원들러를 고의로 차별 대우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 원들러는 이러한 규제당국의 행위로 인해 3가지 유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그 청구액은 최초 약 4,900억 원 (2억 5,900만 스위스프랑), 최종 약 3,250억 원(2억 1,69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 * 쉐들러 주장 3가지 손해 유형 : ① 유상증자로 인해 쉐들러가 보유한 HE 주가 하락,
② 유상증자로 인해 부당한 파생상품계약 유지 비용의 지속적 지출, ③ 콜옵션 저가
양도로 인한 주주 이익 침해 등

□ 한국 정부 주장 : 본건은 ‘주주 간 사적 분쟁’으로, 정부 조치는 적법

○ [私的 경영권 분쟁에 불과] 정부는 본건의 본질이 ‘주주 간(쉐들러와 현대그룹 회장 간) 경영권 분쟁’에 불과함에도 그 불만을 국제법상 국가 책임으로 돌리려는 쉐들러의 시도는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규제당국 조치의 적법성] 정부는 공정위·금융위·금감원의 각 조치가 국내 법령과 관행을 엄격히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특히, 금감원의 HE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와 공정위의 콜옵션 양도에 대한 조사** 역시 적법하게 수행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주의 규제 원칙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수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심사하거나 조사할 의무가 없음

** 공정위는 방대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적법한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약 15개월간 면밀히 조사한 끝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적법하게 판단함

○ [정치적 유착 등 허위 주장 반박] 우리 정부는 쉐들러 측의 ‘대기업 편들기’나 ‘외국인 투자자 차별’ 주장이 추측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 [충분한 법적 보호 제공] 정부는 우선 투자협정상 ‘충분한 보호 및 안전(FPS)’ 의무 위반은 국제법상 ‘물리적 보호’를 의미하는 것일 뿐 쉐들러 주장과 달리 ‘법적 보호’를 포함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나아가, 가사 쉐들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쉐들러가 한국 법원에서 충분한 법적 구제를 받았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쉐들러는 2014. 1. HE 이사 4명(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파생상품계약 체결 등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1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2023. 3. 현대그룹 회장이 HE에 1,700억 원 및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대법원)되었고, 2023. 4. 13. 위 회장은 HE에 실제로 배상금 및 이자 합계 약 2,815억 원을 완납

판정 요지

-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全적으로 받아들여, 정부가 투자협정 상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정·공평대우(FET) 의무 위반 부존재] 중재판정부는 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FET) 위반이 성립하려면 규제당국의 조치나 부작위가 단순한 국내법 위반을 넘어 ▲‘자의적·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 ▲‘선의 및 정당한 목적 결여(악의성)’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위 기준에 따라, 판정부는 대한민국의 규제당국(공정위·금융위·금감원)이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행동했다는 원들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또한 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현대그룹 측을 부당하게 비호하거나 악의(Bad faith)를 품고 규제 권한을 남용했다는 원들러 측 주장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 [충분한 보호 및 안전(FPS) 의무 위반 부존재] 중재판정부는 투자협정상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는 투자에 대한 ‘물리적’ 보호에 국한되는 것이며, ‘법적 보호’까지 확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설사 ‘법적 보호’까지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들러는 이미 한국의 사법체제 내에서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았으므로, 한국 정부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없으므로, 원들러가 주장한 3가지 유형의 손해(주가 하락, 파생상품계약 유지비용, 콜옵션 양도 손해)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 [소송비용] 또한, 정부가 주장한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Costs follow the event)’에 따라, 원들러 측에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선고일 환율 기준)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 의의 및 향후 계획

□ 8년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일궈낸 대한민국의 완전한 승리

- 본 사건은 2018년 중재의향서 접수 이후 8년 간 진행된 대형 투자 분쟁으로서, 우리 정부가 치밀한 법리 개발과 증거 수집을 통해 거대 글로벌 기업의 공세를 국제중재에서 완벽히 방어한 값진 승리입니다.
- 특히 이는 우리 정부 ISDS 사건 중 중재절차 본안 심리단계에서 ‘전부 승소’를 거둔 역대 두 번째 사례*로, 대한민국 정부의 전문적인 ISDS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입증한 쾌거입니다.

* 최초 본안 심리 후 승소한 사례: 중국투자자 ISDS 중재절차 사건 (2024. 6. 2.자 법무부 보도자료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참조

□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의 성과

- 이번 승소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 공정위·금융위·금감원은 실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치의 적법성을 입증했고, 법무부는 이를 국제법적 논리로 구성하여 판정부를 설득했습니다.

□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존중’이라는 국제법 원칙 확립

- 본 판정은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비차별적으로 수행한 합리적 규제 권한의 행사는 국제법적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Right to Regulate)’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의의가 큼니다.
- 또한, 외국 투자자가 사적인 분쟁을 국제법상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끌어들여 천문학적 배상금을 받으려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혈세 낭비 방지 및 소송비용 환수 결정을 통한 국고 보호

- 법무부는 중재절차 전 과정에서 엄격한 비용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여, 원들러 측보다 수십억 원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획득했습니다.
- 나아가 승소 판정에 따라 약 96억 원 상당의 소송비용과 이자까지 원들러 측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후속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고, 소송비용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판정 정정/해석/보충신청 등 절차, 중재지(파리) 법원에서의 판정 취소소송 등 ☐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태호 (044-200-2190)
		담당자	사무관 김태원 (044-200-2192)
담당부서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	책임자	과 장 강병중 (044-215-7630)
		담당자	사무관 황예진 (044-215-7632)
담당부서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책임자	과 장 이송주 (02-2100-7716)
		담당자	사무관 최영재 (02-2100-7719)
담당부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2-2110-3331)
		담당자	검 사 양준열 (02-2110-4321)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통상분쟁대응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한주실 (044-203-5810)
		담당자	사무관 문희조 (044-203-5956)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책임자	과 장 문종숙 (044-200-4866)
		담당자	사무관 임채영 (044-200-486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미정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김민수 (02-2100-2691)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	책임자	국 장 이동규 (02-3145-8420)
		담당자	팀 장 한만조 (02-3145-8463)

주요 절차	일자	주요 내용
서면 공방		
선들러 중재 제기	2018. 10. 10.	선들러 측 중재신청 통지 접수
중재판정부 구성	2019. 1. 13.	의장중재인 Lawrence Shore 정부 지명 Loretta Malintoppi 선들러 지명 Neil Kaplan
1차 준비서면 접수	2020. 1. 24.	선들러, 1차 준비서면(Statement of Claim) 접수
1차 반박서면 제출	2020. 6. 5.	정부, 1차 반박서면(Statement of Defence) 제출
2차 준비서면 접수	2022. 8. 19.	선들러, 2차 준비서면(Statement of Reply) 접수
2차 반박서면 제출	2023. 3. 10.	정부, 2차 반박서면(Statement of Rejoinder) 제출
3차 손해보고서 제출	2023. 12. 7.	선들러, 3차 손해보고서 제출
	2024. 2. 20.	정부, 3차 손해보고서 제출
구술심리 및 심리 후속 공방		
변론요지서	2024. 4. 3.	양측, 변론요지서 (Skeleton Argument) 제출
구술심리	2024. 4. 22. - 26.	구술심리 개최 (헤이그)
심리 후속서면	2024. 7. 5.	양측, 심리 후속서면 (Post-hearing Brief) 제출
중재판정 선고	2026. 3. 13.	정부 전부 승소 (한국시간 3. 14. 02:03 접수)